

학위수여 규정

제정 1980. 3. 1. 규정 제 40호
 개정 1982. 8. 7. 규정 제106호
 개정 1983. 3. 1. 규정 제148호
 개정 1983. 12. 13. 규정 제180호
 개정 1984. 12. 5. 규정 제201호
 개정 1985. 10. 8. 규정 제226호
 개정 1989. 6. 13. 규정 제281호
 개정 1992. 1. 30. 규정 제313호
 개정 1994. 1. 26. 규정 제350호
 개정 1997. 6. 14. 규정 제417호
 개정 2000. 3. 1. 규정 제488호
 개정 2000. 5. 22. 규정 제499호
 개정 2001. 3. 1. 규정 제521호
 개정 2001. 8. 6. 규정 제234호
 개정 2001. 12. 14. 규정 제551호
 개정 2002. 4. 25. 규정 제566호
 개정 2003. 8. 13. 규정 제605호
 개정 2004. 3. 18. 규정 제611호
 개정 2008. 4. 17. 규정 제712호
 개정 2008. 10. 31. 규정 제729호
 개정 2009. 9. 4. 규정 제769호
 개정 2010. 8. 20. 규정 제803호
 개정 2012. 1. 11. 규정 제833호
 개정 2013. 2. 15. 규정 제872호
 개정 2015. 8. 31. 규정 제920호
 전부개정 2017. 3. 22. 규정 제956호
개정 2017. 7. 25. 규정 제969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원 학칙」 제32조에 의거하여 학위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학위의 종류 및 종별) ① 한국학대학원(이하 “대학원”이라 한다)에서 수여하는 학위의 종류는 석사, 박사 및 명예박사로 하며, 그 종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사 : 문학 석사, 한국학 석사
2. 박사 : 문학 박사, 철학 박사, 경제학 박사, 정치학 박사, 교육학 박사, 한국학 박사, 인류학 박사, 종교학 박사, 사회학 박사

② 학위의 종별을 신설 또는 변경할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를 정한 후,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고, 수료인정 학점을 논문을 제출하는 학기까지 취득하여야 한다.

제4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 ①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이하 “자격시험”이라 한다)은 매 학기 1회 실시하며, 외국어시험과 전공시험으로 한다.

5-0-3. 학위수여 규정

- ② 응시자격은 석사과정 18학점, 박사과정 27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점 평균이 2.7 이상인 자로 한다.
- ③ 외국어시험은 1과목으로 하되 내국인 학생은 영어나 한문 중 택일하여야 하며, 외국인 학생은 한국어에 응시하여야 한다.
- ④ 외국어시험은 각 과목마다 대학원장이 위촉하는 1인 이상의 시험위원이 출제하여 채점한다. 단, 영어 시험은 자격시험 접수 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취득한 TEPS, TOEIC, TOEFL, IELTS(Academic Module) 성적표 제출로 대체한다.
- ⑤ 자격시험의 각 과목별 합격 점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불합격한 과목에 대하여는 재응시할 수 있다.
1. 한문, 한국어 및 전공시험 : 70점 이상으로 한다.
 2. 영어 : TEPS 570점 이상, TOEIC 720점 이상, TOEFL IBT 80점 이상, IELTS 5.5점 이상으로 한다.
-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외국어시험을 면제할 수 있다.
1. 영어 : 입학 전형 시 제출한 영어 성적이 제5항제2호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한 자
 2. 한국어 :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6급 인증을 받은 자
- ⑦ 전공시험은 필기시험을 원칙으로 하며, 전공별로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 시험결과와 관련 서류를 즉시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1. 석사과정: 전공에서 제시한 4과목 중 응시자가 2과목을 선택해서 실시한다.
 2. 박사과정: 전공에서 제시한 5과목 중 응시자가 3과목을 선택해서 실시한다.
- ⑧ 외국어시험에 응시하는 학생은 소정의 응시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제4조의2(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관한 특례)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 또는 미응시한 자에 대하여 2017학년도 제2학기부터 2019학년도 제1학기까지 1회에 한해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7.07.25.>
- ② 제1항에 의하여 특례 신청을 한 자는 이 규정 시행 당시의 자격시험에 따라 응시한다. <신설 2017.07.25.>
- 제5조(학위청구논문의 제출) ① 학위청구논문은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서 및 별지 6호서식의 학위논문작성 연구윤리서약서와 함께 대학원장에게 제출한다.
- ② 학위청구논문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석사학위 청구논문의 제출 시기는 5월말과 11월말 연 2회로 한다.
 2.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제출 시기는 3월말과 9월말 연 2회로 한다.
- ③ 학위청구논문 제출의 횟수 및 허용 기한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석사학위 청구논문은 2회 제출할 수 있으며, 입학년도로부터 6년이 경과한 뒤에는 제출할 수 없다.
 2. 박사학위 청구논문은 3회 제출할 수 있으며, 입학년도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뒤에는 제출할 수 없다.

3.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복무 기간 및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학은 학위 청구논문 제출기한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군복무 기간은 의무복무 기간에 한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과정을 수료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논문제출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 과정별로 2년의 범위 내에서 승인할 수 있다.

⑤ 학위 논문은 국문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되, 외국어 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단, 특별한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영어로 작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⑥ 단독 역주서 및 번역서도 석사학위 청구논문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⑦ 학위청구논문 제출자는 대학원에서 정하는 소정의 논문 심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학위청구논문 제출 및 심사의 특례) ① 제5조제3항에 의한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의한 연장기한을 초과한 자 중에서 국외 및 국내 지방 장기 근무, 질병, 출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학위청구논문심사는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대학원장은 특례대상자의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 중인 교수를 지도교수로 신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 ① 학위청구논문 심사는 전·현직 대학 교원을 심사위원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논문의 주제나 성격이 특수한 경우,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대학 교원이 아닌 학계의 권위자를 심사위원으로 할 수 있다.

③ 논문심사를 개시한 이후에는 심사위원을 교체할 수 없다. 단, 심사위원이 질병, 사망, 장기간의 해외체류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심사를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체할 수 있다.

④ 심사위원은 지도교수가 대학원장에게 추천하고,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원장이 위촉한다.

⑤ 논문제출자의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석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3명 이상, 박사학위논문의 심사위원은 1명 이상의 원외 위원을 포함한 5명 이상으로 한다.

제8조(학위청구논문 심사위원장) ① 대학원장은 심사위원 중 1명을 심사위원장으로 지정하여, 심사의 진행을 주재하고 심사에 필요한 일정 조정 등 회의 운영과 심사결과 보고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지도록 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심사에 있어서 위원과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 단, 지도교수는 심사위원장이 될 수 없다.

5-0-3. 학위수여 규정

제9조(학위청구논문 심사방법 등) ① 심사위원이 협의하여 논문심사 및 구술시험 일정을 심사위원장이 결정하고, 심사위원 전원이 참석하여 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심사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화상심사로 진행할 수 있다.

③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는 3회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학위청구논문의 심사) ①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으로 하며, 각각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학위청구논문의 합격판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석사학위논문: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의 점수 평균을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심사위원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

2. 박사학위논문: 논문심사와 구술시험의 점수 평균을 80점 이상으로 평가한 심사위원이 5분의 4 이상인 경우

제11조(학위청구논문 심사결과와 보고) ① 심사위원장은 심사보고서 및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심사위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전기 학위수여 대상자는 12월 30일, 후기 학위수여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박사학위 청구논문 심사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심사위원장의 신청에 의해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다.

제12조(조건부 합격) ① 최종 심사결과에 따라 수정·보완을 지시할 때에는 “조건부합격”을 판정하고 수정기한을 명시해야 하며, 수정기한은 심사결과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2주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심사위원장은 기한 내에 수정·보완된 논문을 재심한 후 “수정보완 확인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처리한다.

제13조(논문 제출) 합격판정을 받은 논문은 전기 학위수여 대상자의 경우 1월 30일까지, 후기 학위수여 대상자의 경우 7월 30일까지 심사위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인쇄본을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학위 수여 결정) 학위 수여는 학위청구논문 심사 결과에 따라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단, 박사학위 수여는 대학원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5조(학위 수여) 학위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장이 수여하되,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의 학위기로 행한다.

제16조(명예박사 학위) ① 명예박사 학위는 우리나라 학술과 문화 발전에 특수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 문화 향상에 지대한 공적을 나타낸 자에게 수여한다.

② 명예박사 학위의 종별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③ 명예박사 학위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대학원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원장이 수여하되, 별지 제3호서식의 학위기로서 행한다. 단, 명예박사 학위 수여 심의는 대학원위원회 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1. 명예박사 학위 수여 예정자의 이력서
2. 명예박사 학위 수여 예정자의 공적 개요

제17조(학위 취소) 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자가 당해 학위를 부정한 방법으로 받았거나 명예박사학위를 받은 자가 그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각각 그 학위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0학년도 신입생 및 통합과정 전입생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통합과정으로 전입된 학생의 통합과정 자격심사는 3차 학기까지의 이수 과목 평점 평균에 의한다.

② 석·박사 과정 재적생 및 수료생의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 제7조에 의하되 응시 자격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년 5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박사 과정 재적생의 학위 종류 및 종별에 관하여는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학생이 전국 규모의 해당 분야 공인학술지에 발표한 동일 논문으로 연구성과학점, 종합시험, 석사학위논문제출인정 중 1회에 한하여 이를 인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1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2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 제2항과 제3항은 2003년도 입학생부터 적용하며, 이전 입학생은 개정 전의 조항을 적용한다.

부 칙

5-0-3. 학위수여 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3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위논문 제출에 관한 특례) 이 규정 시행 이전 학칙에 따라, 학위과정을 수료하였으나 제8조 제3항에 의하여 학위논문 제출 기한을 경과한 자에게 현행 학위수여규정에 따라 2004년 2학기부터 2006년 1학기까지 1회에 한하여 논문 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8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 제>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이미 시행 중인 석·박사학위 통합과정에 관한 사항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0년 8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 제>

부 칙

이 규정은 201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하되, 201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3.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학위수여규정 시행세칙의 폐지) 이 규정의 시행과 동시에 「학위수여규정 시행세칙」은 폐지한다.

제3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2017학년도 제2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 응시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글로벌한국학부 학생에 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전기 이전에 입학한 글로벌한국학부 학생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 제5조의2(학술지 게재의 의무), 제6조(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시험)제5항제2호 단서 및 제6조의2(글로벌한국학부의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따른다.

제5조(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의 특례 승인을 받은 자에 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학위청구논문 제출기한의 특례 승인을 받은 자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원 제출 기한을 2년으로 한다.

부 칙 <2017.7.25.>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0-3. 학위수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석사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 석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제목 :

년 월 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장

○○박사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석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박사

학위등록번호 : 한국학대 0000(석)00

[별지 제2호서식]

박사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위 사람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과정을 이수하고 소정의 시험과 논문심사에 합격하여 학 박사의 자격을 갖추었으므로 이를 인정함.

논문제목 :

년 월 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장
○○박사

위의 인정에 의하여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박사

학위등록번호 : 한국학대 0000(박)00

5-0-3. 학위수여 규정

[별지 제3호서식]

명박 제 호

학 위 기

성 명
년 월 일생

이 분은 함으로써(우리나라 학술과 문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기에/ 인류문화 발전에 지대한 공적을 나타냈기에)
대학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예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하여
그 공적을 찬양하고자 이에 추천함.

년 월 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장

○○박사

위의 추천에 의하여 명예 ○○학 박사의 학위를 수여함.

년 월 일

한국학중앙연구원장

○○박사

학위등록번호 : 한국학대 0000(명박)00

[별지 제4호서식]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Graduate School
hereby has conferred upon

○ ○ ○

the degree of
Master of Arts

with title, honor and privileges pertaining thereto,
and in witness thereof has authorized the issuance of this Diploma
duly signed and sealed.

Given in Republic of Korea
the ○○ day of ○
in the Year of Two Thousand and ○.

○○○, Ph.D.

Dean of the Graduate School

○○○, Ph.D.

President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별지 제5호서식]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Graduate School
hereby has conferred upon

○ ○ ○

the degree of
Doctor of Philosophy
in ○○○

with title, honor and privileges pertaining thereto,
and in witness thereof has authorized the issuance of this Diploma
duly signed and sealed.

Given in Republic of Korea
the ○○ day of ○
in the Year of Two Thousand and ○.

○○○, Ph.D.
Dean of the Graduate School

○○○, Ph.D.
President of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별지 제6호서식]

학위논문작성 연구윤리서약서

제출자

과정	학 부	전 공	성 명	학 번

위 본인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대학원생으로서 이 학위논문 작성 과정에서 다음과 같이 연구윤리의 기본원칙을 준수함을 서약합니다.

첫째, 연구수행 시 본원 연구윤리규정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합니다.

둘째, 논문작성 시 위조, 변조, 표절 등 학문적 진실성을 훼손하는 어떤 연구부정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셋째, 연구윤리를 준수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와 불이익 및 그로 인한 학위취소 등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감수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개인정보수집이용내역	성명, 학번	연구윤리 서약	(준)연구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논문심사원 제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한국학대학원장 귀하